

서울동부지방법원 2018. 3. 6 선고 2017가단3889, 2017가단13055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
(병합) 지료청구의소]

재판경과

서울동부지방법원 2019. 1. 30 선고 2018나23058 판결

서울동부지방법원 2018. 3. 6 선고 2017가단3889, 2017가단130552 판결

전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건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로고스

담당변호사 김영수,임수식

변론 종결 2018. 1. 16

판결 선고 2018. 3. 6

주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C 대 184㎡ 중 3/88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,2016. 1. 1.부터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소유지분권 상실일까지 월 363,63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D은 서울 송파구 C 대 184㎡(이하,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를 매수하여 1966. 9.12.

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및 연와조 평옥 개 2층 건주택점포 1동(이하,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에 관하여는 1977. 7. 16.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.

나. D이 2013. 8. 30. 사망하자 그 공동상속인들인 D의 처 E, 장남 피고, 장녀 F, 차 남 원고, 삼남 G는 2013. 10. 경 '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E이 3/11지분, 피고가4/11지분, 원고, G가 각 2/11지분을 공유하기로 하고,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위하여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인 원고와 G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기로 하며,E 사망시 E의 지분 3/11은 E을 부양하고 있는 피고에게 모두주기로 한다'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(이하,'이 사건 협의'라 한다)를 하였다.

다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협의에 따라 2013. 8. 30. 협의분할에 의한 상 속을 원인으로 2013. 10. 29. E이 3/11지분,피고가 4/11지분, 원고, G가 각 2/11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, 2016. 12. 5. E이 사망하자 이 사건토지 중 표의 3/11지분(이하,'이 사건 대상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2016. 12. 5. 유증을 원인으로 2017. 2. 14. 피고 명의의

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라.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점포에서 김밥장사를 하였는데,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처를 상대로 위 점포에 관한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자(이 법원 2013가단65087, 2014가합4680), 원고와 G, F은 피고를 상대로, 망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(이 법원 2014가합2363)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지분이전등기 청구소송(이 법원 2014가합2370)을 제기하였고, 이 법원 2014가합2363 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G, F, 피고 사이에 2014. 6. 24. '원고와 G, F은 이 법원 2014가합2363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이 법원 2014가합2370 지분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모두 취하한다'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, 갑 제3호증의 1, 2, 갑 제4호증의 1, 2, 갑 제6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.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유류분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

(1) 원고의 주장

원고는 E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대상 토지에 관한 유류분을 가지고 있으므로,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/88지분(= E의 지분 3/11 × 원고의 법정상속분 1/4 × 유류분 1/2)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.

(2) 판단

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권을 가지는 상속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는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 및 유증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므로,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인 E의 피고에 대한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상속인인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.

이 사건 대상 토지에 관하여 2016. 12. 5. 유증을 원인으로 2017. 2. 14. 피고 명의의

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, 원고는 E의 상속인들 전원이 E 사망시

이 사건 대상 토지를 피고에게 주기로 한 이 사건 협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바, 이 사건 대상 토지에

관한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의 기재에도 불구하고이 사건 협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고, 피상속인인 E이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증여또는 유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.

따라서 이 사건 대상 토지는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, 피상속인이 결정한 유증 또는 증여를 일정한 한도에서 반환시키는 취지로 만들어진 유류분 제도를 근거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.

나. 지료 청구에 관한 판단

(1) 원고의 주장

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 2/11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의 동의 없이 사용하고 있으므로,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점포를 인도한 2015. 12. 30. 이후인 2016. 1. 1.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지분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피고에게 월 363,636원(= 이 사건 토지의 월 차임 상당액으로 추정되는 2,000,000원 X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공유지분 2/11) 상당의 지료를 구한다.

(2) 판단

망 D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E, 피고, F, 원고, G 사이에 '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인 원고와 G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기로 한다'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,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료 청구 등 권리행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거나 지료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(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협의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만을 하지 않기로 한 약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), 따라서 위와 같은 약정에 반하는 원고의 지료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윤이나